|  |  |  |
| --- | --- | --- |
| **해외투자관리방법**상무부령 2014년 제3호<해외투자관리방법>이 2014년 8월 19일 상무부 제27차 부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장 가오후청(高虎城)2014년 9월 6일**제1장 총칙**1.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규율하며 해외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행정 심사비준 보류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이 방법에서 해외투자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이하 '기업'으로 약칭)이 신설, 인수합병 및 기타 방식을 통해 경외 기존 비금융기업의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3. 기업은 해외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손익을 스스로 책임진다.
4. 기업은 해외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2) 중화인민공화국과 유관 국가(지역)의 관계에 손해를 주는 행위;(3)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협약에 위배되는 행위;(4)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금지 화물과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1. 상무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약칭)가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장 신고(備案)와 허가(核準)**1.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기업 해외투자를 관리함에 있어 상황별로 신고제 또는 허가제를 실시한다.

기업의 해외투자가 민감한 국가·지역이나 민감한 업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허가제로 관리한다.기업의 기타 해외투자는 신고제로 관리한다.1. 허가제로 관리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국가 또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 국가를 지칭한다. 필요한 경우 상무부는 허가제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국가 및 지역 명단을 별도로 공표할 수 있다.

허가제로 관리하는 업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기술의 수출과 연관된 업종과 1개국(지역) 이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칭한다. 1.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실시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해외투자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으로 약칭)을 이용하여 기업 해외투자 관리를 실시하고 신고 또는 허가 승인을 득한 기업에게 <기업해외투자증서>(이하 <증서>로 약칭, 양식은 첨부1 참조)를 발급한다. <증서>는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각각 인쇄제작 및 날인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증서>는 기업이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승인을 득한 증빙으로 해외투자의 최종목적지에 따라 발급한다. 1.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해외투자의 경우 중앙기업은 상무부에 신고하고 지방기업은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신고한다.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에 따라 <해외투자 신고표>(이하 '<신고표>'로 약칭, 양식은 첨부2 참조)를 작성 및 출력하여 공인 날인 후 기업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같이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 신고수속을 처리한다.<신고표>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법정(法定)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고, 기업이 <신고표>에서 해외투자가 이 방법 제4조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성명한 경우,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표>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신고를 승인하고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업이 <신고표>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를 승인하지 아니한다.1.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해외투자의 경우 중앙기업은 직접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지방기업은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한다.

기업이 해외투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청서. 신청서에는 투자주체의 기본사항, 해외투자기업의 명칭, 지분구조, 투자분야, 경영범위, 경영기한, 투자자금의 출처, 투자 세부사항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2) <해외투자 신청표>(양식은 첨부3 참조). 기업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사항에 따라 <해외투자 신청표>를 작성 및 출력하여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3) 해외투자 관련 계약서 또는 협의서;(4) 관련부서로부터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또는 기술의 수출을 허가받은 자료.(5) 기업의 영업집조 복사본.1. 해외투자를 허가할 때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중앙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상무부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기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의견을 청취한다.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의견을 요청할 때 투자의 기본사항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은 의견청취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회답해야 한다.
2. 상무부는 중앙기업의 허가신청을 수리한 후 20일 근무일 내(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 청취시간 포함)에 허가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3일 근무일 내에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기업에게 일괄고지해야 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앙기업이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보충하였을 경우 상무부는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지방기업의 허가 신청을 수리한 후 이 방법 제4조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초보심사하고 15일 근무일 내(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 청취시간 포함)에 초보심사 의견서와 모든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3일 근무일 내에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기업에게 일괄고지해야 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기업이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보충하였을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초보심사 의견서를 접수한 후 15일 근무일 내에 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해외투자를 허가한 경우 상무부는 서면 허가결정서를 발행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이 방법 제4조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기업에게 서면으로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기업이 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상무부는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2.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적 대주주인 투자자가 기타 투자자들의 서면동의를 득한 후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각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일치한 경우 각 투자자의 합의하에 일방 투자자가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각 투자자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속되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담당한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 또는 허가의 결과를 기타 투자자 소재지의 상무주관부서에 고지해야 한다.
3. 기업이 해외투자 신고 또는 허가 승인을 득한 후 기존 <증서>상에 기재된 해외투자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 변경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4. 기업이 <증서> 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해외투자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해외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5. 기업이 허가를 득한 해외투자를 종료 시에는 투자 목적지 법률에 따라 말소 등 수속을 이행한 후 해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상무주관부서는 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소 확인서를 발행한다.

종료라 함은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 설립한 해외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거나 기업이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 설립한 해외기업의 지분 등 그 여하한 권익을 더이상 보유하지 않음을 지칭한다. 1. <증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하거나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변경, 효력상실 또는 말소된 <증서>는 비안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제3장 규율과 서비스**1. 기업은 객관적으로 자체의 조건과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 목적지의 투자환경을 철저히 연구하며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리스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외 법률, 법규 및 규장에서 자격·자질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업은 관련 증명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2. 기업은 해외투자기업에게 투자목적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사회책임을 이행하고 환경, 노동보호, 기업문화 구축 등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여 현지사회와의 융합을 촉진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기업이 해외투자기업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국내외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기업은 해외투자기업의 명칭에 '중국', '중화' 등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4. 기업은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돌발사태 경보기제와 응급 대비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 및 국내 관련 주관부서의 지도하에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해외파견인력의 심사·선정, 파견 전의 안전·기율교육 및 응급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해외파견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현지에서의 합법체류·취업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1. 기업은 해외투자기업의 중국측 책임자에게 직접 또는 서신, 팩스, 이메일 등 방식으로 적시에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에 도착 보고·등기를 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기업은 비안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해외투자 업무상황, 통계자료 및 해외투자의 애로사항과 이슈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내용과 데이터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3. 기업의 해외투자기업이 해외재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 법률수속을 마친 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기업의 경우 '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해외 중자기업 재투자 보고표>(이하 '재투자 보고표'로 약칭, 양식은 첨부4 참조)를 출력 및 공인 날인 후 상무부에 제출한다. 지방기업의 경우 '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재투자 보고표>를 출력 및 공인 날인 후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한다.
4.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해외투자 관리상황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반년마다 본 행정구역 내의 해외투자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5. 상무부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권익보장, 투자촉진, 리스크 경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무부는 <대외투자 합작국가(지역)별 지침>, 국가별 산업 지침 등 문건을 발표하여 기업이 투자목적지의 투자환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도와 규율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환경보호 등 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의 해외에서의 합법·준법경영을 촉구한다. 대외투자 및 합작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하여 데이터 통계, 투자기회, 투자장애·리스크 경보 등 정보를 제공한다. **제4장 법률책임**1. 기업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당 수단으로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무부 또는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기업의 투자신고를 취소하고 경고처벌을 내리며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공표한다.
2. 기업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 상무부는 경고처벌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공표한다. 해당 기업은 1년동안 해당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다.

기업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 수단으로 해외투자 허가를 획득한 경우, 상무부는 해당 기업의 해외투자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처벌을 내리며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공표한다. 해당 기업은 3년동안 해당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1. 기업이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 제4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기업이 <증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하거나 그 어떠한 형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무부 또는 상무주관부서가 경고처벌을 내리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해외투자 과정에서 제28조부터 제31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년동안 국가 관련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4. 상무부 및 상무주관부서의 해당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재물공여를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수수한 경우,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장 부칙**1.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여 상응한 업무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 방법에서 중앙기업이라 함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출자인으로서의 직책을 이행하는 기업 및 그 산하기업,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타 업체를 지칭한다.
3. 사업기관법인(事業單位法人)의 해외투자, 기업의 해외지사 설립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4. 기업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5. 이 방법은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6. 이 방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가 2009년에 공표한 <해외투자관리방법>(상무부령 2009년 제5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 1. 기업해외투자증서(양식).doc<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07315.doc>2. 해외투자 신고표(양식).docx<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24474.docx>3. 해외투자 신청표(양식).doc<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39088.doc>4. 해외 중자기업 재투자 보교표(양식).doc<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59736.doc> |  | **境外投资管理办法**商务部令2014年第3号《境外投资管理办法》已经2014年8月19日商务部第27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4年10月6日起施行。部长　高虎城2014年9月6日**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促进和规范境外投资，提高境外投资便利化水平，根据《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及相关法律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本办法所称境外投资，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企业（以下简称企业）通过新设、并购及其他方式在境外拥有非金融企业或取得既有非金融企业所有权、控制权、经营管理权及其他权益的行为。**第三条** 企业开展境外投资，依法自主决策、自负盈亏。**第四条** 企业境外投资不得有以下情形：（一）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或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二）损害中华人民共和国与有关国家（地区）关系；（三）违反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四）出口中华人民共和国禁止出口的产品和技术。**第五条** 商务部和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以下称省级商务主管部门）负责对境外投资实施管理和监督。**第二章 备案和核准****第六条** 商务部和省级商务主管部门按照企业境外投资的不同情形，分别实行备案和核准管理。企业境外投资涉及敏感国家和地区、敏感行业的，实行核准管理。企业其他情形的境外投资，实行备案管理。**第七条** 实行核准管理的国家是指与中华人民共和国未建交的国家、受联合国制裁的国家。必要时，商务部可另行公布其他实行核准管理的国家和地区的名单。实行核准管理的行业是指涉及出口中华人民共和国限制出口的产品和技术的行业、影响一国（地区）以上利益的行业。**第八条** 商务部和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依法办理备案和核准，提高办事效率，提供优质服务。商务部和省级商务主管部门通过"境外投资管理系统"（以下简称"管理系统"）对企业境外投资进行管理，并向获得备案或核准的企业颁发《企业境外投资证书》（以下简称《证书》，样式见附件1）。《证书》由商务部和省级商务主管部门分别印制并盖章，实行统一编码管理。《证书》是企业境外投资获得备案或核准的凭证，按照境外投资最终目的地颁发。**第九条** 对属于备案情形的境外投资，中央企业报商务部备案；地方企业报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备案。中央企业和地方企业通过"管理系统"按要求填写并打印《境外投资备案表》（以下简称《备案表》，样式见附件2），加盖印章后，连同企业营业执照复印件分别报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备案。《备案表》填写如实、完整、符合法定形式，且企业在《备案表》中声明其境外投资无本办法第四条所列情形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备案表》之日起3个工作日内予以备案并颁发《证书》。企业不如实、完整填报《备案表》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不予备案。**第十条** 对属于核准情形的境外投资，中央企业向商务部提出申请，地方企业通过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向商务部提出申请。企业申请境外投资核准需提交以下材料：（一）申请书，主要包括投资主体情况、境外企业名称、股权结构、投资金额、经营范围、经营期限、投资资金来源、投资具体内容等；（二）《境外投资申请表》（样式见附件3），企业应当通过"管理系统"按要求填写打印，并加盖印章；（三）境外投资相关合同或协议；（四）有关部门对境外投资所涉的属于中华人民共和国限制出口的产品或技术准予出口的材料；（五）企业营业执照复印件。**第十一条** 核准境外投资应当征求我驻外使（领）馆（经商处室）意见。涉及中央企业的，由商务部征求意见；涉及地方企业的，由省级商务主管部门征求意见。征求意见时，商务部和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提供投资事项基本情况等相关信息。驻外使（领）馆（经商处室）应当自接到征求意见要求之日起7个工作日内回复。**第十二条** 商务部应当在受理中央企业核准申请后20个工作日内（包含征求驻外使（领）馆（经商处室）意见的时间）作出是否予以核准的决定。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商务部应当在3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企业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中央企业按照商务部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商务部应当受理该申请。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在受理地方企业核准申请后对申请是否涉及本办法第四条所列情形进行初步审查，并在15个工作日内（包含征求驻外使（领）馆（经商处室）意见的时间）将初步审查意见和全部申请材料报送商务部。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在3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企业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地方企业按照省级商务主管部门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受理该申请。商务部收到省级商务主管部门的初步审查意见后，应当在15个工作日内做出是否予以核准的决定。**第十三条** 对予以核准的境外投资，商务部出具书面核准决定并颁发《证书》；因存在本办法第四条所列情形而不予核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企业并说明理由，告知其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企业提供虚假材料申请核准的，商务部不予核准。**第十四条** 两个以上企业共同开展境外投资的，应当由相对大股东在征求其他投资方书面同意后办理备案或申请核准。如果各方持股比例相等，应当协商后由一方办理备案或申请核准。如投资方不属同一行政区域，负责办理备案或核准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将备案或核准结果告知其他投资方所在地商务主管部门。**第十五条** 企业境外投资经备案或核准后，原《证书》载明的境外投资事项发生变更的，企业应当按照本章程序向原备案或核准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办理变更手续。**第十六条** 自领取《证书》之日起2年内，企业未在境外开展投资的，《证书》自动失效。如需再开展境外投资，应当按照本章程序重新办理备案或申请核准。**第十七条** 企业终止已备案或核准的境外投资，应当在依投资目的地法律办理注销等手续后，向原备案或核准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报告。原备案或核准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根据报告出具注销确认函。终止是指原经备案或核准的境外企业不再存续或企业不再拥有原经备案或核准的境外企业的股权等任何权益。**第十八条** 《证书》不得伪造、涂改、出租、出借或以任何其他形式转让。已变更、失效或注销的《证书》应当交回原备案或核准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第三章 规范和服务****第十九条** 企业应当客观评估自身条件、能力，深入研究投资目的地投资环境，积极稳妥开展境外投资，注意防范风险。境内外法律法规和规章对资格资质有要求的，企业应当取得相关证明文件。**第二十条** 企业应当要求其投资的境外企业遵守投资目的地法律法规、尊重当地风俗习惯，履行社会责任，做好环境、劳工保护、企业文化建设等工作，促进与当地的融合。**第二十一条** 企业对其投资的境外企业的冠名应当符合境内外法律法规和政策规定。未按国家有关规定获得批准的企业，其境外企业名称不得使用"中国"、"中华"等字样。**第二十二条** 企业应当落实人员和财产安全防范措施，建立突发事件预警机制和应急预案。在境外发生突发事件时，企业应当在驻外使（领）馆和国内有关主管部门的指导下，及时、妥善处理。企业应当做好外派人员的选审、行前安全、纪律教育和应急培训工作，加强对外派人员的管理，依法办理当地合法居留和工作许可。**第二十三条** 企业应当要求其投资的境外企业中方负责人当面或以信函、传真、电子邮件等方式及时向驻外使（领）馆（经商处室）报到登记。**第二十四条** 企业应当向原备案或核准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报告境外投资业务情况、统计资料，以及与境外投资相关的困难、问题，并确保报送情况和数据真实准确。**第二十五条** 企业投资的境外企业开展境外再投资，在完成境外法律手续后，企业应当向商务主管部门报告。涉及中央企业的，中央企业通过"管理系统"填报相关信息，打印《境外中资企业再投资报告表》（以下简称《再投资报告表》，样式见附件4）并加盖印章后报商务部；涉及地方企业的，地方企业通过"管理系统"填报相关信息，打印《再投资报告表》并加盖印章后报省级商务主管部门。**第二十六条** 商务部负责对省级商务主管部门的境外投资管理情况进行检查和指导。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每半年向商务部报告本行政区域内境外投资的情况。**第二十七条** 商务部会同有关部门为企业境外投资提供权益保障、投资促进、风险预警等服务。商务部发布《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国别产业指引等文件，帮助企业了解投资目的地投资环境；加强对企业境外投资的指导和规范，会同有关部门发布环境保护等指引，督促企业在境外合法合规经营；建立对外投资与合作信息服务系统，为企业开展境外投资提供数据统计、投资机会、投资障碍、风险预警等信息。**第四章 法律责任****第二十八条** 企业以提供虚假材料等不正当手段办理备案并取得《证书》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撤销该企业境外投资备案，给予警告，并依法公布处罚决定。**第二十九条** 企业提供虚假材料申请核准的，商务部给予警告，并依法公布处罚决定。该企业在一年内不得再次申请该项核准。企业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获得境外投资核准的，商务部撤销该企业境外投资核准，给予警告，并依法公布处罚决定。该企业在三年内不得再次申请该项核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三十条** 企业开展境外投资过程中出现本办法第四条所列情形的，应当承担相应的法律责任。**第三十一条** 企业伪造、涂改、出租、出借或以任何其他形式转让《证书》的，商务部或省级商务主管部门给予警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三十二条** 境外投资出现第二十八至三十一条规定的情形以及违反本办法其他规定的企业，三年内不得享受国家有关政策支持。**第三十三条** 商务部和省级商务主管部门有关工作人员不依照本办法规定履行职责、滥用职权、索取或者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第五章 附 则****第三十四条** 省级商务主管部门可依照本办法制定相应的工作细则。**第三十五条** 本办法所称中央企业系指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履行出资人职责的企业及其所属企业、中央管理的其他单位。**第三十六条** 事业单位法人开展境外投资、企业在境外设立分支机构参照本办法执行。**第三十七条** 企业赴香港、澳门、台湾地区投资参照本办法执行。**第三十八条** 本办法由商务部负责解释。**第三十九条** 本办法自2014年10月6日起施行。商务部2009年发布的《境外投资管理办法》（商务部令2009年第5号）同时废止。附件1、企业境外投资证书（样式）.doc<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07315.doc>2、境外投资备案表（样式）.docx<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24474.docx>3、境外投资申请表（样式）.doc<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39088.doc>4、境外中资企业再投资报告表（样式）.doc<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59736.doc> |